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안일자 2006. 4. .

제안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및 무대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은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국민생활관 사용료 일부를 13.6% ~ 25%까지 인상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삭제
- 안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19호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위
하여 삭제한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를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4조(위탁운영의 철회)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 유효하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우청소년”을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우청소년, 장애인(1~3급 동행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배우자, 상이등급 1급 동행자 1인 포함)”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1(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이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시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③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 대인 사용료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 대인 사용료							【별표1】 (현행과 같음)	
구분	사용일수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노인	비고	구분	사용일수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노인	비고		
수영장	월회원 (월~일)	28,000원	34,000원	40,000원	28,000원		수영장	월회원 (월~토)	35,000원	42,000원	50,000원	35,000원			
	1일회원 개인	2,000원	2,200원	2,500원	2,000원			1일회원 개인	2,000원	2,500원	3,000원	2,000원			
	단체	1,500원	1,700원	2,000원	1,500원			단체	1,500원	2,000원	2,500원	1,500원			
헬스장	월회원 (월~일)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헬스장	월회원 (월~토)	20,000원	30,000원	35,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회원 (월~일)	20,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회원 (월~토)	20,000원	25,000원	30,000원	20,000원			
※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 <정의>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임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일 입장하여야 함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 7일(월~일) 사용 하되 수업은 주 5일(월~금)을 말함○“청소년”이라 함은 중, 고, 대학생을 말함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 ○“단체”라 함은 단체구성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위 종목의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 <용어의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임.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6일(월~토) 이용회원을 말함.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생(7세 ~ 12세 이하)을 말함.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함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단체”라 함은 인원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비고	구분	사용목적	단위	요금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원	40,000원		체육관	체육경기	삭제					
		야간	40,000원	50,000원				삭제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 발표,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강의실	발표, 교육, 행사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강의실	발표, 교육, 행사	삭제					
					삭제								
전시실	전시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전시실	삭제						
※ 주간사용은 일출부터 일몰전까지 8시간 이내임 ※ 야간사용은 18:00 ~ 22:00까지(동계는 17:00 ~ 21:00까지)						※ 체육관의 주간사용은 09:00~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야간사용은 18:00~22:00까지(동계는 17:00 ~ 21:00) ※ 소극장 1시간 사용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평일 : 10,000원, 토·일·공휴일 : 12,000원으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3】 ○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3】 (현행과 같음)																																																									
<table><tr><th colspan="2">시설명</th><th>단위</th><th>사용료</th><th>비고</th></tr><tr><td rowspan="2">피아노</td><td>일반행사</td><td>1회</td><td>20,000</td><td rowspan="9">·1회는 4시간 이내로 함 ·피아노연주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신설)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로 함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 조명을 무료로 함 ·영화 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td></tr><tr><td>예식행사</td><td>1회</td><td>10,000</td></tr><tr><td>무대조명</td><td></td><td>시간당</td><td>20,000</td></tr><tr><td rowspan="3">음향시설</td><td rowspan="3">음향반사판·녹음·릴·카세트테이프</td><td>1회</td><td>20,000</td></tr><tr><td>1회</td><td>30,000</td></tr><tr><td>1회</td><td>10,000</td></tr><tr><td>영사기</td><td>70m/m</td><td>시간당</td><td>40,000</td></tr><tr><td></td><td></td><td>“</td><td>20,000</td></tr><tr><td></td><td></td><td>“</td><td>10,000</td></tr><tr><td>드라이 아이스기</td><td></td><td>1회</td><td>10,000</td></tr><tr><td>스모스키</td><td></td><td>1회</td><td>10,000</td></tr></table>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일반행사	1회	20,000	·1회는 4시간 이내로 함 ·피아노연주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신설)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로 함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 조명을 무료로 함 ·영화 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	예식행사	1회	10,000	무대조명		시간당	2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녹음·릴·카세트테이프	1회	20,000	1회	30,000	1회	10,000	영사기	70m/m	시간당	40,000			“	20,000			“	10,000	드라이 아이스기		1회	10,000	스모스키		1회	10,000	<table><tr><th colspan="2">시설명</th><th>단위</th><th>사용료</th><th>비고</th></tr><tr><td>무대조명</td><td>무대조명 시설</td><td rowspan="2">1회 4시간 기준</td><td>30,000 원</td><td rowspan="2">·1회 4시간 이내로 함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8,000원으로 함</td></tr><tr><td>냉·난방</td><td>냉난방 시설</td><td>30,000 원</td></tr></table>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무대조명 시설	1회 4시간 기준	30,000 원	·1회 4시간 이내로 함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8,000원으로 함	냉·난방	냉난방 시설	30,000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일반행사	1회	20,000	·1회는 4시간 이내로 함 ·피아노연주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준비(신설)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안의 50%로 함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 조명을 무료로 함 ·영화 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																																																															
	예식행사	1회	10,000																																																																
무대조명		시간당	2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녹음·릴·카세트테이프	1회	20,000																																																																
		1회	30,000																																																																
		1회	10,000																																																																
영사기	70m/m	시간당	40,000																																																																
		“	20,000																																																																
		“	10,000																																																																
드라이 아이스기		1회	10,000																																																																
스모스키		1회	10,000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무대조명 시설	1회 4시간 기준	30,000 원	·1회 4시간 이내로 함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초과시간은 시간당 8,000원으로 함																																																															
냉·난방	냉난방 시설		30,000 원																																																																
○ 국민생활관 기본 및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										※ 무대조명 및 냉·난방비는 이용시만 사용료 징수함.																																																									
<table><tr><th>구분</th><th>사용료 징수</th></tr><tr><td>전용 사용시</td><td>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가산</td></tr><tr><td>연습 사용시</td><td>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가산</td></tr></table>					구분	사용료 징수	전용 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가산	연습 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가산																																																									
구분	사용료 징수																																																																		
전용 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가산																																																																		
연습 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가산																																																																		